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정간물법 개정에 따른 반론권의 해설을 중심으로

양삼승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I. 서론

가. 1996년 7월 1일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이 태어나는 날이고, 우리의 언론중재제도가 성년이 되어 홀로서기를 하는 날이며, 나아가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로부터 환골탈퇴하여 「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창립하는 날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정간물법)이 1995. 12. 18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중 상당부분이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것이다.

나. 위 개정 내용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이하에서 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구분하여 24개 항목이 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① 중량급으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의 핵심」에 관련되는 항목이 6개 항목 ② 중량급으로 「언론중재절차 등에 관한 실무」에 관련되는 항목이 9개 항목 ③ 경량급으로 「주의적 규정 내지는 경미한 절차에 관한 실무」에 관련되는 항목이 9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다. 우선 궁금증의 해소를 위하여 개정내용 중 중량급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나열해 보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론보도」라는 학술적 용어를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승격시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어떻게보면 단지 용어의 정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15년동안의 법조계 및 학계의 끊임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용어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필요없는 논쟁과 오해의 여지를 없앤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둘째는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이 종래의 「객관적 기준」(「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에서 「주관적 기준」(「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으로 바뀌었다. 이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는 신청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게 해주려는 배려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존의 입장을 발전적으로 크게 전환한 것이다.

셋째는 본 개정내용의 핵심중의 핵심으로서, 종래의 반론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물론 이 용어는 종전 정간물법상 「정정보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민법상 원상회복 수단으로 인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정보도」이다.) 까지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는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급적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론」과 「정정」의 두 개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 언론중재제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넷째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부가 강제적으로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종래 직권중재결정 권한이 없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가 단순히 조정만에 그치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헛된 낭비만을 하게 되는 비능률을 해소하여 중재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라. 이제 1996. 7. 1 위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의 종사자들 및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여, 실제 적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해설」하여, 관계인들의 실무상 편익에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입법론적인 또는 정책적인 고찰이나 비판을 가급적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개정법률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오게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해당 개소에서 간단히 서술하기로 한다.

II. 법 개정애 이르기 까지의 과정

위 개정법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법개정에 이르기 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80. 12.31. 언론기본법 제정 · 시행

우리의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도 「반론권」이라고 하는 「법적 창조물」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부여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서양(프랑스 및 독일)에서 부터 비롯된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함에 있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충격과 혼란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갑자기 폭주할지도 모르는 반론권의 행사(반론권은 그 성질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를 억제하기 위한 편법적이고, 위장적인 전술로서 그 용어를 정식으로 「반론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다. 다만 의도적인 용어 선택의 부정확함이 그후 필요없는 논의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었다. 위 1980. 12. 31. 이후 약 10여년 동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종사자, 언론인 및 법조인들 모두가 새로이 도입된 반론권제도를 익히고, 실무상 처리절차를 마련해 가는데에 급급한 시기이었다.

나. 1987년의 언론기본법 폐지 및 정간물법 등으로의 수용

언론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획기적인 제도인 위반론권 제도는, 그러나 그 옷을 잘못 입고 태어난 때문에, 그 탄생을 전적으로 축복받지는 못하였다. 즉 반론권이 규정된 위 언론기본법은, 1987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출생동기의 불순함을 지적받아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그 와중에서 반론권제도까지 휩쓸려 사형선고를 당할 위기에 몰렸으나, 그 동안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반론권제도는 그 언론 매체의 종류에 따라 1987. 11. 28 정간물법 또는 방송법의 일부로 흡수되어 이산가족은 되었으나 그 생명은 유지할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은전을 부여받게 되었다. 다만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물법 등으로 흡수되면서 그동안의 언론중재과정의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 기회에 시정해 보려는 개정시도(특히 반론권이라는 용어의 도입 주장 등)가 있었으나, ① 추후보도청구권(언론에 피의자로 보도되었다가 후에 무죄판결등을 받은 경우의 구제 수단임)을 새로이 규정하고 ② 당사자 불출석시의 취하간주 또는 합의간주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간단한 개정 이외에는 더 큰 선물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성숙을 위한 자기노력

a. 1987년의 위기를 넘긴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권과 그 중재에 관한 실무경험을 10여년 동안 쌓고, 그 동안 법원으로부터도 반론권제도에 관한 상당한 양의 판례가 형성되어 가자(법원의 판례중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1986. 1. 28 85 다카 1973의 대법원 판결로서, 이 판결에 의하여 반론권제도의 실체가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991년경 부터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 생활의 질에 까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즉 보다 나은 언론중재제도의 확립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b. 그리하여 ① 이러한 방향의 최초의 시도로서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91년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1991. 8. 22~24 : 박용상 부장판사 발표) ② 이어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92년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992. 8.26 :필자 발표). 1991년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해박한 지식과 외국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개정의견을 다수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1992년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제도의 토착화 내지는 내실화를 도모하는데에 기본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c. 이와 같은 사전의 연구과정을 거쳐 1993년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인 개정노력이 시도되었다. 즉 1993년 상반기에 언론중재위원회로 부터, 박용상 부장판사 및 필자가 공동으로 용역을 받아, 자유로운 입장에서,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피해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각각 「단일의 독립된 법안」으로 하는 경우와, 기존의 「정간물법을 개정하는 법안」으로하는 경우로 나누어 작성 되었다.

이와같이 작성제출된 법률초안을 토대로 하여, 다시 언론중재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축조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1993. 7. 27 (김두현, 이해복, 한동원, 이범렬, 이공현, 서정우) ② 1993. 8. 2(김두현, 한동원, 이범렬, 서정우) ③ 1993. 8. 3(김두현, 이해복, 한동원) 각 축조 심의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d. 이러한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을 대략 정한 후 이를 토대로 1993. 11. 9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발표자: 필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위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1995. 12. 18 정간물법의 개정안으로 통과되게 된 것이다.

III. 법개정 논의과정에서의 핵심적인 토론사항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행해졌는 바, 그 과정에서 뜨거운 issue 로 등장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가. 단일법의 「제정」인가, 기존법의 「개정」인가?

반론권제도 및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절차 규정이 현행의 정간물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 규정 형식상 적절하지 못한 것임은 누차 지적되어 왔고, 또한 그 지적이 적절한 것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긍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기회에 「언론폐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위와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법이론상 및 이상론으로서는 단일법의 제정이 타당하지만, 단일법 제정시 예상되는 국회통과 과정의 어려움 및 언론계의 반발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하였다. 즉 이제 막 뿌리를 내려 정착단계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말라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여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리라는 판단이었다. 그 결과 단일법의 제정은 분위기가 더욱 성숙되기를 기다려 후일의 숙제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현행법 개정의 방법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나. 「반론보도」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채택

종래 정간물법 제 16 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소위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반론권」에 해당되는 것임은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고, 법원의 판결(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서도 긍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 년의 법 개정시에 위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반론」으로 고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고, 그 이후 계속하여 「반론」이라는 용어를 「학문상의 용어」에서 「법률상의 용어」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염원은 간절한 것이었으며, 그동안 법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우선 순위 1 번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

다행히 이번의 법개정시에 위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반론권제도는 그 법시행 이후 15 년만에 비로소 빌려입은 옷을 버리고 그 「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나아가 그동안 「정정보도」라는 용어에 대신할 용어로서 「반론권」 「반박권」 「응답권」 「반박보도청구권」 등의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가 판정승을 거두고 법전용어로 화려한 외출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권한」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여할 것인가?

앞서 본 2가지의 쟁점은 모두 「형식」에 관한 논의였으나, 「실질」에 관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종전과 같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권한 이외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중재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었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언론중재 실무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반론권제도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주어진 혜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반론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의 법규정상 반론권에 대한 중재권한만이 부여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인 「정정보도의 청구」까지 아울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권한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도 맞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되게 되었다. 논의의 결과 위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번의 개정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정에 수반하여서는 부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의 정책적 및 법률적인 선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본론 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의 앞날을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권, 정정보도청구권 이외에도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서까지도 중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주장의 논거로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적 장치로 ① 반론보도청구 ② 정정보도청구 ③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3가지를 들 수 있는 바, 언론피해가 발생되고 이를 해결 중재하기 위한 제도로써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마당에는, 중재위원회에 위 세가지 모두에 대한 중재권한을 부여하여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중재부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거를 제시 하였다. 즉 손해배상의 내용으로서는 첫째 언론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것과, 둘째 언론피해로 인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것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전자의 경우에는 그 배상액수의 범위만이 문제로 되어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언론의 침해와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제조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잘못된 보도가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그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결과 그 회사가 도산하게 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상정한다면, 과연 그 회사가 도산하게 된 원인이 오로지 위 잘못된 언론보도에 있다고 쉽게 확정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다른 원인이 같이 개재되어 있을 경우(예를 들면, 위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정상태가 건실하지 못한 경우)에 그 오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에서 회사의 도산에 기여하였다고 볼것인지(더욱이 현재의 민법 이론상으로 오보가 일부분에 있어서만 회사의 도산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등의 이론으로 그 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는지, 감경시킬 경우 어느 정도 이를 참작할 것인지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오보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손해액수로 인정할 것인지(예를 들어 매출의 감소만을 손해로 인정할 것인가, 나아가 매출의 감소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회사의 이미지 손상도 손해로 인정할 것인가.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한결같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서, 중재위원회에 중재의 과정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언론사와의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현재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아(더욱이 개정법은 언론중재사건의 중재위원회에서의 처리기간을 최장 21 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중재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논의 결과,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현실론이 우세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따라서 이는 금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하고, 이번의 개정 작업에서는 제외되게 되었다.

마. 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종래 중재위원회의 실무경험의 결과, 현재의 언론중재제도는, 법률상 「강제중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중재」가 아니라 「조정」의 역할만을 하는데에 그쳐왔다. 그 결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정을 거친 결과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게 되어, 공연히 법원에의 제소만을 늦추게 되어 권리실현이 늦어지는 불합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언론중재제도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에 「직권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재위원회 실무자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위 의견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하 본문에서 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항목을 나누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V. 용어의 정리 (「반론보도」 용어의 도입)

가. 종래 정간물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던 「정정보도」라는 용어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의 의미이고, 이러한 용어상의 부정확함이 누누히 지적되어 왔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까지 그 잘못이 확인된 결과, 이번의 개정법률에서, 비로소 그 몸에 걸맞는

웃으로 갈아입어 「반론보도」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오랫동안의 숙원을 이룬 것이다. 한편으로는 용어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 15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는 데에서, 법률개정작업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나. 그 동안의 많은 연구 발표와 판례들을 통하여 이제는 널리 알려진 바이기는 하지만, 이번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인 관계상 여기에서 다시한번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개념상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a. 먼저 「반론」(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여기에서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여기에서는 언론피해자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중요한 파생원칙이 나타난다.

첫째는, 「반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언론의 보도)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즉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경우에도 이론상 반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론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의 주장(언론의 보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여 반론을 주장하는 측은 「……한 보도가 있었던 사실」 「위 보도에 의하여 그가……한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더 이상의 입증은 필요없으므로 반론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시간내에, 중재과정과 소송과정에서 대부분 승소할 수 밖에는 없는 제도인 것이다.

둘째는, 반론의 경우에는 상대방(언론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반론을 주장하는 측의 그 주장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권자 자신」이고 「언론사」가 아니다. 즉 언론사는 그가 발행하는 언론매체에 반론문을 실을 지면만을 할당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의 경우에는 독자에게 주는 피해회복 조치로서의 강도가 훨씬 낮은 것이다.

b. 다음으로 「정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그 잘못을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역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파생원칙이 나타난다.

첫째는 「정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언론의 보도)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은 정정을 주장하는 언론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이 간단치 아니한 것임은 우리의 경험상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이 입증을 위하여 소송의 실제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정정」의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부담을 정정보도 신청인은 안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정정의 경우에는 상대방 언론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 항복을 받는 것이므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패소한 경우 입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고, 반면 언론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조치의 강도가 훨씬 높으며, 일반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훨씬 깊은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성질상의 차이에 기하여 「반론」의 제도는 특별법인 정간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정정」의 제도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권리구제 절차이었던 것이다.

V. 중재대상의 확대(정정보도청구도 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

가. 대상확대의 취지

개정된 정간법은 제 18 조 제 1 항에서 「...민법 제 764 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론권 이외에도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한 중재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위 중재대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확대야말로 이번 「개정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논의과정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개정의 근본적 취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첫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으로 인정되는 법적수단 중 반론권과 정정 보도청구를 함께 신청·중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편리하게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법률상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 구제의 구체적 수단이 결국은 「똑같은 언론매체를 사용하여 일정내용을 게재 보도」케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상호간에 중재의 절차나 내용이 통일적일 수 있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둘째는, 과거 15년동안의 언론중재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반론의 형식이 아닌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왔고, 이 경우 중재과정의 실무상 반론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중재를 해왔던 실정을 참작한 것이다. 즉 중재신청의 현실이 위와 같은 마당에 변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실제상황을 직시하여 정정보도청구는 그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중재로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셋째는, 앞서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의 청구자는 그 요건(보도된 사실이 허위인 것)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것)가 너무 강대하여 패소시의 충격이 큰 부담이었으므로, 정정보도의 청구를 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그 중재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여 청구인은 입증의 부담을 덜고, 피청구인은 패소시 충격을 더는 타협적 조치로서 반론문을 게재함으로써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법원에의 제소에 이르지 아니하고, 언론피해 분쟁이 중재단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내면적인 입법취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대상확대는 「임의적」이다.

a.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론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그 사전절차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법 제 19 조 제 1 항 전단), 정정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이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개정법 제 19 조 제 2 항에서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은 민법 제 764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됴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다시 강조하거나와 정정보도의 청구를 함께 있어서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서 미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즉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중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b. 혹시 견해에 따라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반론권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까지도 포함시키는 마당에는, 언론피해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응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반론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반드시」(필요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에 대한 중재신청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된 데에는 현행법(특히 민법과 관련하여)의 체계상 어쩔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고려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법률적인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① 「반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그 발생의 근거가 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이 반론권을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은 위 반론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 내지는 범위」를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역시 위 정간물법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간물법은 위 반론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의 제한을 두고있다. 그 제한 중 중요한 것의 2 가지(이 이외에도 반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위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가, 첫째는 일정기간 이내에만(즉 개정전 법에는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4 일 이내... 이고 개정된 법에는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이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둘째는 반론권행사를 위하여는(즉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하게한 것이다. 반면에 ②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즉 위 권리는 그 발생의 근거가 민법 제 764 조(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정보도 청구이다-)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민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즉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중재 등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하여 제 766 조에서 「...손해 (즉 명예훼손)를 안 날로부터 3 년」 또는 「불법행위(즉 명예훼손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③ 위 두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에 비하여 2 가지 점에서 그 권리행사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정정보도청구는 사전에 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권리행사의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하여 염두에 둘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여기에서는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을 그 법률자체(즉 민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여기에서는 정간물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④ 앞에서 설명한 바를 종합하면, 정정보도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더욱이,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반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월 이내 등 단기로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피해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다른 법인 정간물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결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적 및 입법 기술적인 난점을 피하면서, 동시에 언론피해구제 방법으로서의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상확대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a. 문제점

중재의 대상으로 반론권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이 추가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상(사건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중재심리 및 중재결정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재신청인들이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의 서류로서 중재신청을 해올 경우이다(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다 익숙한 용어인 「정정보도청구」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가 과연 반론이나 정정보도의 어느 하나만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주된 청구로는) 정정보도를 구하면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예비적 청구로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이 보통일 것이다. 나아가 중재심리의 과정이나 중재결정의 단계에서도 두 가지의 사건을(어느 한가지만 청구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만 심리 결정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병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합하여 진행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도 있다.

b.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 및 현재로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실무상 처리는 실무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우선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사건 접수의 단계(신청인에 대한 설명·안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사건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중재신청인이 「반론보도」 청구사건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정보도」 청구 사건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의 모두」를 신청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 상당기간동안은 신청인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신청해 올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접수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양자의 차이를 가능한 상세히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주도록 하여, 그런 연후에 신청인의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할 것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적으로는 위 양 권리의 개요와 차이점

등을 알기쉽게 적은 「안내문」 등을 작성·비치하여 두고 이를 통한 설명이 편리할 것이다.

②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

설명외 결과, 신청인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신청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처리하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보호의 폭이 더 넓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우선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보충적·예비적 수단으로 「반론보도」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상으로는 반드시 두 가지(정정 보도청구사건과 반론보도청구사건) 종류의 접수부, 사건번호, 사건부등을 비치해 두고 사건기록도 별개로 편철하여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처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두 가지의 사건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절차, 즉 법원에의 제소 등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법원에 제소를 하는 등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소된 이후에도, 반론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따라서 법원의 실무상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본안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어(따라서 민사렬안부에 배당된다.)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의 재판부에서 심리되게 되기 때문이다.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사자가 1 통의 신청서(정정 보도 또는 반론보도신청서)만을 작성해 왔으나, 접수시 설명의 단계에서, 두개의 사건으로 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고 다시 형식에 맞추어 두 종류의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오도록 요구할 것인가 이다.

신청인이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올 의향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실무자는 한 통의 신청서를 복사하여, 두개의 사건으로 접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여진다. 이 경우 신청서에 사용된 문안이나 용어가 다른 사건을 위하여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적절한 양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문서를 작성·비치해 두고(예를 들면, 한 신청서에서 「반론」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정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본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문구를 기재해둔 문서), 원래의 신청서를 복사한 후, 위 보조문서를 첨부함으로써 새로운 신청서의 작성에 대신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중재부의 심리 및 중재

사건의 배당을 받아 실제 중재에 임하는 중재부의 입장에서도 역시 두개의 사건을 법률상 별개로 취급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편리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 두 가지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분쟁이 된 사실관계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그 증거 방법도 서로 공통된 것이 보통이므로(물론 입증책임의 소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에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가 보도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다), 심리 및 중재는 이를 서로 병행하여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VI. 중재신청과정에 관한 개정내용

가. 반론보도청구기간(객관적 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으로)

a. 개정내용 및 취지

(ㄱ) 종전규정 : 이번 정간물법의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세가지 중의 하나로서 반론보도청구기간에 대한 변경을 들 수 있다. 즉 종전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이는 외부적으로 공표가 행해진 날이 기준이 되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어느 특정일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다) 14 일(일간신문이나 통신의 경우) 또는 1 월(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이내로 규정되어 있었다(개정전 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ㄴ) 개정내용 : 이에 반하여, 개정된 정간물법(제 16 조 제 1 항 및 제 18 조 제 1 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이는 내부적·심리적으로 공표가 된 것을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피해자가 언제 이를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고, 따라서 피해자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기산일이 정해진다) 1 월 이내(공표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게되며, 한 가지로 통일하였다.)로 규정되게 되었다.

(ㄷ) 예외 : 다만, 위와 같이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보도사실을 오랜 세월이 경과된 뒤(때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때라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언론사를 언제까지라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될 염려가 있으며, 또는 그 언론보도가 시사성을 완전히 상실한 뒤에까지 새삼스럽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없어서 버릴 위험성 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은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실보도가 있는 후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가 그 보도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 것이다(법 제 16 조 제 1 항 단서.) 위 기간을 6 월로 한 것(다만 개정안에서는 3 월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6 월로 되었다.)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기간을 정한 것인데, 참고로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3 개월의 기간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위 기간을 1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ㄹ) 개정취지 : 반론보도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객관적 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으로 바뀐 것은 언론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종전의 공표일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방법은 언론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입장을 배려하는 데에 치중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었다. 즉, 종전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다면, 언론피해자가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에는(예를 들면, 피해자가 외국에 있었다거나, 또는 어떤 사정으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경과되어 버려,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위 기간이 14 일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기준일을 기산일로 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공표가 있은 후 확정적인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론보도청구를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종래 언론기본법의 제정 당시,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신청가능기간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게 했던 것은, 반론권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혹시라도 반론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되어 오히려 언론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의 법 시행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위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사회 전체의 수준이나 언론의 역량 역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토대가 되어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b. 실무상 문제점

위와 같이 중재신청기간의 기산일이 객관적 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론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론중재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을 던져 주게 되었다. 즉 중재 사건을 접수하는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언론보도가 언제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신청기간내에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신청인이 언제 공표가 있었는지를 「알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수단계에서부터 기간내의 적법한 신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c. 해결방안

이 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첫째는, 신청접수단계에서 안내를 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표가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청서에 공표가 있음을 최초로 안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객관적 자료로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 오래 있었던 경우에는 귀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입국증명서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친지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어떤 보도 사실이 있음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이를 전해준 사람의 자술서,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 즉 피해자 본인이 언제 비로소 그와 같은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중재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은 우선은 신청자가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청인의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 이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제는 반대로, 피신청인(언론사)의 입장에서 중재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인이 언론보도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1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중재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반론청구의 상대방

종래 반론보도청구의 상대방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발행인이라함은 언론매체의 기업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발행하는 대표자이고,

편집인이라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언론매체의 편집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반론청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 위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도 대법원의 규칙으로서(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3 조) 피청구인을 「기업」인 「언론사」로 하도록 정리하였으며, 외국의 실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반론청구의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라고 통일하여 알기쉽게 기재한 것이다.

다. 반론청구권자의 범위

a. 종전의 규정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피해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위 피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민법적으로 해석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해석될 소지가 많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언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언제나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 되어야 한다거나(심지어는 전혀 하급의 국가기관인 경우까지도)하여 실제에 부응하여 반론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말단 파출소에 관한 허위의 보도가 문제로 된 경우에 경찰청장이 신청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반론권을 규정한 위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 해석인 것이다.)

b.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 16 조에 제 7 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장의 이름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c.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 제 16 조 제 1 항의 「피해자」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반론권 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민법의 이론과는 독립하여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인격의 유무를 떠나서, 사회생활상 하나의 활동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폭 넓게 반론권의 주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태도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해석태도이고 또한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어느 파출소에 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파출소장의 이름으로, 어느 행정부처의 어느 과의 업무에 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과장의 이름으로 어느 지방법원지원에 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지원장의 이름으로, 법원의 판결에 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재판부의 이름으로 각 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개정안 제 16 조 제 7 항의 규정도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한 진보적인 규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점에서 위 규정은 단지 제 16 조

제 1 항의 「피해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예시적 규정」이지 결코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d.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면, 최소한 반론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이 사리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체가 민사법상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법의 주류적인 견해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로 되는 것은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 또는 사법상 단체이든 묻지 아니하고, 정당, 노동조합, 상법상 회사는 물론,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 등도 모두 반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VII. 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내용

가. 중재위원의 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수는 종전 40 인 이상 70 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위 법 제 17 조제 2 항), 개정법에서는 40 인 이상 80 인 이내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 개 중재부당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종전 14 개 중재부에서 16 개 중재부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상으로는 서울지방에 1 개 중재부를 신설하고, 나머지 1 개 중재부는 그 이외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원의 수 및 중재부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즉 하나는, 중재신청 사건의 자연증가에 따라, 중재부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게 된 결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중재신청의 대상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까지도 함께 포함됨으로써, 중재신청되는 사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다.

나. 중재위원의 위촉방법

종전에는 중재위원의 위촉은 공보처 장관이 하되, 다만 그 5 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위원 중 5 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 신청의 대상으로서 「정정보도」 청구사건까지 추가되게 되었고 나아가 중재부에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력한 권한인 직권중재결정 권한까지 부여되게 된 결과, 어느 의미에서 보면 혹시라도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언론활동이 위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방법으로 언론중재과정에서 중재부의 중재위원 5 인중 1 인은 반드시 언론계

인사로 하도록 하여 언론계의 의사가 중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하는 배려에 기초한 것이다.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보여진다.

다.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개정법은, 이번 개정의 기회에 언론중재위원의 중립성 내지는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인사로서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따라서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소속으로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와 ②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추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올바른 입법태도라고 보여진다.

VIII. 중재절차에 관한 개정 내용

가. 최초 중재기일의 지정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한 것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자율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중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은 결코 중재제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중재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중재기일 지정의 시한(예를 들면 신청접수 후 1주일 이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토의의 결과 이는 중재절차 진행의 유연성 내지는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낙착 되었다.

나. 처리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전의 법 제 18 조 제 7 항은 접수 후 14 일 이내에 중재를 하도록 하고, 위기간이 경과되면 중재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었다. 개정법의 논의 과정에서는, 중재부의 기일은 2 차에 한하여 실시하게 하거나, 중재처리기간을 최장 28 일로 하는 방안(이는 물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중재 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이 검토되었으나, 중재부에 기일진행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재의 신속 종결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결국 제 18 조 제 4 항에서 신청접수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중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제 18 조 6 항 단서에서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중재결정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위 기간을 21 일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다. 불출석시의 제재

중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때의 제재 방안에 관하여는 개정전이나 후나 그 차이가 없다. 다만 용어상 부정확한 점을 시정하여 종전 신청인이 1 회 불출석 한때의 신청 「철회」 간주를 「취하」 간주로 정리하였고, 피신청 인이 2 회 불출석한 때의 「중재신청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간주하는 규정을,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간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IX. 중재결정에 관한 개정 내용

가. 직권중재 결정

a. 금번 정간물법 개정 내용의 가장 중요한 3 가지 중의 마지막 하나가 바로 직권중재결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이는 중재부의 중재과정에서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재가 불성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의 「중재」 제도는 사실은 「조정」(medi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진정한 「중재」(arbitration)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중재과정은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가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중재제도가 결국은 권리의 실현만을 지연시킬 뿐,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특히피신청인인 언론사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조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으나, 언론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법률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개정법은 제 18 조 제 6 항에서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라고 새로이 규정하게 된 것이다.

b. 개정법에서 이와 같이 직권중재결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과거 15 년 동안의 중재위원회의 실무경험의 축적의 결과 얻어진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형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꽃이라고도 할이 제도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권중재의 권한을 부여받은 중재부로서는 중재과정에서 획득한 정확한 정보와 균형잡힌 판단력을 동원하여 결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앞으로의 직권중재결정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c. 이와 같은 직권중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개정법은 중재사건 처리기간을 통상의 14 일에서 이 경우에는 21 일로 연장해 주고 있음(18 조 6 항 단서)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일정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중재불성립 결정

a. 다만 중재신청된 사건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중재부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직권중재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즉 14 일 이라는 단기간 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거나, 쌍방의 주장이 서로 합리성이 있어서 좀 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판사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직권중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제 18 조 제 6 항에서 「...중재에 적합하지 않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b. 반면에 개정전의 법률에서는, 위와는 방법을 달리하여 법 제 18 조 7 항에서 「중재신청이 접수된 지 14 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중재불성립간주소항」을 두었으나, 이와 같이 불성립간주소항을 두게 되면, 중재부에서 의도적으로 기간을 초과하여 중재성립에 소극적 자세로 임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 결정의 두 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다.

다. 중재합의의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

종래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로서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피신청인 2 회 불출석으로 인한 합의간주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직권중재결정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다(제 18 조 제 7 항).

X .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가. 이의신청 권한의 인정

a.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은 직권중재결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가 앞으로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중재결정에 절대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이 결정을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복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중재부의 결정에는 위와 같은 절대적인 강제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제 18 조 제 7 항 단서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견해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상사사건의 상사중재의 경우에는 그 상사중재부에서 중재결정을 하면, 민소법상의 재심사유에 버금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원에의 제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언론중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중재와 언론중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전자의 경우에는 쌍방당사자가 사전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사중재에 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제력의 부여가 가능한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전의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차이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이의권 남용의 억제방안(도입되지 않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길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남발하여 실질적으로 중재결정을 무력화시키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의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중재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가 후에 법원의 재판에서 중재결정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비용 및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을 명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안을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혹시라도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XI. 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개정내용

가. 제소단계

a. 법원에의 제소기간

종전에는 법원에의 제소기간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이내라고 규정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객관적 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어로 변경한 취지에 맞추어서, 개정법에서는 법원에의 제소기간 역시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b. 간접강제의 병합신청가능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불성립결정이 있거나 또는 중재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심의의 결과 승소하게 된 경우, 피청구인이 그 판결의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이행해 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 693 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신청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권리의 실현까지는 다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시간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위 간접강제의 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법 제 19 조 제 1 항 후단).

나. 상소단계

a. 불복방법의 명시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변론과정을 거쳐서 한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리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재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전자의 경우에는 항소의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8 조).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재판 방법은 실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형식적인 이유에 의하여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연한 절차상 불편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이 아닌 항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였다(개정법 제 19 조의 2 제 1 항).

b. 반론보도청구 인용판결 번복시의 방법 및 부속조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그 재판이 확정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혹시 그 재판이 상급심에서 번복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보도해버린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의 사후처리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핑계로 내세워서 인용된 반론보도재판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도구로 삼아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이러한 의문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백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즉 「위 불복절차에서 심리결과 반론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2 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위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 19 조의 2 제 2 항, 제 3 항).

XII.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개정내용

현행법은 추후보도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라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의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공소기각, 면소 등등의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위 기소중지, 공소기각, 면소 등의 사유는 다양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인 사유만으로서도 기소 중지, 공소기각, 면소 등의 재판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그 제도의 인정취지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안에서는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만에 한하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법 제 20 조 제 1 항).

XIII. 맺는말(앞으로의 과제)

가. 뿌리의 정착

a. 1980. 12. 31. 우리나라에 반론권제도 및 이를 위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15 년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생소했던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간으로서,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제 1 세대」라고 할 수 있다.

b. 이제 이번의 법개정을 통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다음의 시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제 2 세대」라고 할 것이다. 이 한국형 언론중재제도의 핵심은, 첫째 반론보도 이외에도 정정보도를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과, 둘째 중재부에 직권중재 결정 권한을 부여한 데에 있다. 앞의 본문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이 도입한 위 두 가지 제도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고 중재위원회의 실무 관행이 형성·확립되기 위하여는 중재에 관여하는 모든 분의 노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직권중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재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력과 언론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사명감 및 비전이야말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

나. 제도약을 위한 준비

a.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이번의 법개정은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한걸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결코 「마지막 한걸음」은 아니었다. 보다 완벽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b. 첫째는 언론피해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단일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결코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따라서 결코 몸에 걸맞는 옷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번의 법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약간 거칠은 시도이기도 하지만, 단일법의 형식으로 된 가안이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단일법안의 명칭으로는 「언론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c. 둘째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반론보도 청구자의 주장을 게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 내지는 보도된 기사의 「부정확함에 대한 시정력」이 너무 미약한 반면에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언론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어서 설득력 내지는

시정력이 강력하기는 하나, 언론사에게 완전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언론사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여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론보다는 강하고 정정보다는 약한」 예를 들면, 철회, 취소, 시정(바로잡음) 등등의 새로운 해결유형들을 연구·개발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외국의 문헌에서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함이 좋을 것이며, 특히 언론계 종사자들 및 국어학자들의 노력이 기대된다.

d. 셋째는 반론,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피해구제제도의 3대 지주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인과관계의 측면이나, 배상범위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한정하여 연구하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언론관계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들이 떠맡아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반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단일법의 제정이 더욱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법학박사), 독일괴팅겐대학 연수
-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 저술 : 「가정적 인과관계론」 외 현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